

#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의 개요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재산 과세로서의 성격과, 도로 손상에 대하여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도로손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 세금으로, 일반적인 현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경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자동차, 이륜 소형자동차, 원동기부착 자전거, 소형 특수자동차와 고정자산세가 부과되는 대형 특수자동차 (불도저, 지게차 등)는 제외. (경자동차세 및 고정자산세는 시정촌의 세금입니다.)

### ■납세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의 매매가 있었던 경우, 매도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에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매수자(예를 들면 소유권 유보조건부 할부판매의 경우)

### ■신고

자동차 매매 시, 폐차 시,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운수지국에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신고서(자동차세·자동차취득세 신고서(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납세

| 구분                            | 납세방법 등                                                                                                                                                                                                                                                                |
|-------------------------------|-----------------------------------------------------------------------------------------------------------------------------------------------------------------------------------------------------------------------------------------------------------------------|
| 4월 1일 현재 소유자                  | 「자동차세 연세액 일람표」 (다음 페이지 참조) 의 구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5월에 현에서 발송하는 납세통지서에 근거하여 5월 31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는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편의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총무부 세무과 홈페이지 ( <a href="http://www.pref.aichi.jp/zeimu/">http://www.pref.aichi.jp/zeimu/</a> ) 를 참고하십시오. |
| 4월 1일 이후 신차 등 미등록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 | 운수지국에 등록 시에 자동차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등록한 달의 익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세액에 입각하여 월 단위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 주십시오.                                                                                                                                                                           |

### ■양도 및 폐차 등을 했을 때의 자동차세

4월 1일 이후에 양도(보상 판매에 따른 양도 등)함에 따라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다음 연도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4월부터 말소등록을 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세액에 입각하여 월 단위로 계산한 세액이 부과되므로, 과다납부된 세금은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이며,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신체에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소유한 자동차이며,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장애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신체에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소유한 자동차이며, 그 사람을 항상 개호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장애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신체에 중증 장애가 있으며 연령이 18세 미만의 사람, 지적 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장애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도난 당하여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해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어 운행불능이 된 경우

## 자동차세 연세액 일람표

| 구분                          |                               | 연세액                                   |                                       |
|-----------------------------|-------------------------------|---------------------------------------|---------------------------------------|
|                             |                               | 자가용                                   | 영업용                                   |
| 승용차                         | 총배기량 1ℓ 이하                    | 29,500 엔                              | 7,500 엔                               |
|                             | 총배기량 1ℓ 초과~1.5ℓ 이하            | 34,500 엔                              | 8,500 엔                               |
|                             | 총배기량 1.5ℓ 초과~2ℓ 이하            | 39,500 엔                              | 9,500 엔                               |
|                             | 총배기량 2ℓ 초과~2.5ℓ 이하            | 45,000 엔                              | 13,800 엔                              |
|                             | 총배기량 2.5ℓ 초과~3ℓ 이하            | 51,000 엔                              | 15,700 엔                              |
|                             | 총배기량 3ℓ 초과~3.5ℓ 이하            | 58,000 엔                              | 17,900 엔                              |
|                             | 총배기량 3.5ℓ 초과~4ℓ 이하            | 66,500 엔                              | 20,500 엔                              |
|                             | 총배기량 4ℓ 초과~4.5ℓ 이하            | 76,500 엔                              | 23,600 엔                              |
|                             | 총배기량 4.5ℓ 초과~6ℓ 이하            | 88,000 엔                              | 27,200 엔                              |
|                             | 총배기량 6ℓ 초과                    | 111,000 엔                             | 40,700 엔                              |
| 트럭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8,000 엔                               | 6,500 엔                               |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2톤 이하             | 11,500 엔                              | 9,000 엔                               |
|                             | 최대적재량 2톤 초과~3톤 이하             | 16,000 엔                              | 12,000 엔                              |
|                             | 최대적재량 3톤 초과~4톤 이하             | 20,500 엔                              | 15,000 엔                              |
|                             | 최대적재량 4톤 초과~5톤 이하             | 25,500 엔                              | 18,000 엔                              |
|                             | 최대적재량 5톤 초과~6톤 이하             | 30,000 엔                              | 22,000 엔                              |
|                             | 최대적재량 6톤 초과~7톤 이하             | 35,000 엔                              | 25,500 엔                              |
|                             | 최대적재량 7톤 초과~8톤 이하             | 40,500 엔                              | 29,500 엔                              |
|                             | 최대적재량 8톤 초과                   | 40,500엔에 8톤을 초과한 매 1톤당 6,300엔을 가산한 금액 | 29,500엔에 8톤을 초과한 매 1톤당 4,700엔을 가산한 금액 |
|                             | 소형자동차인 견인자동차소형                | 10,200 엔                              | 7,500 엔                               |
|                             | 자동차인 피견인자동차                   | 5,300 엔                               | 3,900 엔                               |
|                             | 일반자동차인 견인자동차                  | 20,600 엔                              | 15,100 엔                              |
|                             | 일반자동차이며 최대적재량이 8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  | 10,200 엔                              | 7,500 엔                               |
|                             | 일반자동차며 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 | 10,200엔에 8톤을 초과한 매 1톤당 5,100엔을 가산한 금액 | 7,500엔에, 8톤을 초과한 매 1톤당 3,800엔을 가산한 금액 |
| 최대승차정원이 4인 이상인 것 (화객 겸용 차량) | 총배기량 1ℓ 이하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5,200엔을 가산한 금액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3,700엔을 가산한 금액        |
|                             | 총배기량 1ℓ 초과~1.5ℓ 이하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6,300엔을 가산한 금액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4,700엔을 가산한 금액        |
|                             | 총배기량 1.5ℓ 초과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8,000엔을 가산한 금액        | 상기 적재량 구분별 연세액에 6,300엔을 가산한 금액        |
|                             |                               |                                       | 일반승합용      기타                         |
| 버스                          | 승차정원 30인 이하                   | 33,000 엔                              | 12,000 엔      26,500 엔                |
|                             | 승차정원 30인 초과~40인 이하            | 41,000 엔                              | 14,500 엔      32,000 엔                |
|                             | 승차정원 40인 초과~50인 이하            | 49,000 엔                              | 17,500 엔      38,000 엔                |
|                             | 승차정원 50인 초과~60인 이하            | 57,000 엔                              | 20,000 엔      44,000 엔                |
|                             | 승차정원 60인 초과~70인 이하            | 65,500 엔                              | 22,500 엔      50,500 엔                |
|                             | 승차정원 70인 초과~80인 이하            | 74,000 엔                              | 25,500 엔      57,000 엔                |
|                             | 승차정원 80인 초과                   | 83,000 엔                              | 29,000 엔      64,000 엔                |
| 소형삼륜차                       |                               | 6,000 엔                               | 4,500 엔                               |
| 특수용도 자동차 (주)                | 영구차                           | —                                     | 10,100 엔                              |
|                             | 소형삼륜차                         | 6,000 엔                               | 4,500 엔                               |
|                             | 소형사륜차                         | 13,200 엔                              | 10,200 엔                              |
|                             | 일반자동차                         | 18,400 엔                              | 13,500 엔                              |

(주)특수용도 자동차 중, 캠핑 카(자가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캠핑 카(자가용) | 총배기량          | 연세액      |
|-----------|---------------|----------|
|           | 1ℓ 이하         | 23,600 엔 |
|           | 1ℓ 초과~1.5ℓ 이하 | 27,600 엔 |
|           | 1.5ℓ 초과~2ℓ 이하 | 31,600 엔 |
|           | 2ℓ 초과~2.5ℓ 이하 | 36,000 엔 |
|           | 2.5ℓ 초과~3ℓ 이하 | 40,800 엔 |
|           | 3ℓ 초과~3.5ℓ 이하 | 46,400 엔 |
|           | * 3.5ℓ超~4ℓ以下  | 53,200 엔 |
|           | * 4ℓ超~4.5ℓ以下  | 61,200 엔 |
|           | * 4.5ℓ超~6ℓ以下  | 70,400 엔 |
|           | 6ℓ 초과         | 88,800 엔 |

※원동기로 로터리엔진을 사용한 승용차 및 캠핑 카에 대해서는 총용적에 1.5를 곱한 수치를 총배기량으로 간주하여 상기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의 그린화 세제

### 1. 자동차세의 경감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신차로 신규 등록된 저공해차 및 일정한 저배출가스에 따른 저연비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다음 연도의 1년간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에 따라 상기의 일반세율의 약 25%, 50%가 경감됩니다.

### 2. 자동차세의 중과

2001년부터 2008년도 기간 중에 등록 초년도부터 11년(디젤차) 또는 13년(가솔린차, LPG차)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이후, 상기 세율의 약 10%가 중과됩니다.

### 3. 자동차세 경감기간의 경과

2004년도에 신차로 신규 등록되고, 2005년도에 자동차세 세율 경감 혜택을 받은 자동차는 경감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계속검사(차량검사, 車検)를 받을 경우

차량검사(車検)를 받을 때는 운수지국에 자동차세 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가 없으면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잘 보관하여 두십시오.

##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이라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또한 이 세금은 도로 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목적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치현에 납부된 자동차취득세의 66.5%는 현내 시A나촌에 시정촌 도로의 「면적과 연장의 비율」에 따라 교부되며, 시정촌 도로 관련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28.5%에 대해서는 나고야시에 현내의 국도 및 현도와 나고야 시내의 국도 및 현도의 「면적과 연장의 비율」로안분한 금액이 국도 및 현도 관련 비용으로 가산교부됩니다.

## ■자동차취득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일반자동차(버스, 트럭 포함.), 소형자동차, 경자동차(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 중 이륜차는 제외.)

## ■납세자

자동차(신차, 중고차 불문)를 취득한 사람(할부판매에 의하여 판매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는 매수자)

## ■신고와 납세

다음에 기재된 날까지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신고서(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동차취득세를 납부해 주십시오.

-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등을 하는 자동차를 취득한 때 } ..... 등록일 등 → 신고납부기한
- 상기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한 때 }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참고로 신고납세를 했을 때는 납세액을 기재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신고서(보고서)(보관용 사본)를 교부하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교부 받으십시오.

# ■납부 금액

$$\text{자동차의 취득가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자동차를 무상이나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등은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동차 취득 시에 에어컨, 스테레오 등 옵션용품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세율

| 차종 | 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 경자동차 |
|----|--------------|-----|------|
|    | 자가용          | 영업용 |      |
| 세율 | 5%           | 3%  | 3%   |

※세율의 경감조치  
이하의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는 경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1)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2)2015년도를 목표로 한 중량차 연비기준을 충족시키고, 또한 배출가스 성능이 좋은 차량 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경유를 연료로 한 트럭, 버스 등  
(3)자동차 NOx<sup>⑤</sup>PM법의 대책지역 내에서 일정한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승용차 제외)를 완전 폐차하고 새롭게 교체한 일정 자동차(2009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니다).

# ■일정한 배출가스 성능이 좋은 저연비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의 특례조치

※취득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2008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니다.).

| 구분                                                          | 공제액        |
|-------------------------------------------------------------|------------|
| 2010년도의 연비기준 20%향상 달성차량이며, 또한, 2005년 기준배출가스의 75% 절감수준 달성 차량 | 300,000 만엔 |
| 2010년도의 연비기준 10%향상 달성차량이며, 또한, 2005년 기준배출가스의 75% 절감수준 달성차량  | 150,000 만엔 |

(주 1)특례조치의 적용은 신고 시에 일정한 수속을 한 경우에 한함니다.  
(주 2)특례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세율 경감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 ■면제되거나, 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50만엔 이하일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로, 차량 성능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했을 경우에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드립니다.
- 재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해당 대체차량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은 돌려드립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됩니다.

본 ‘개요’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관련은 하기의 현세사무소로, 자동차취득세 관련은 나고야 동부 현세사무소 자료관리과(052 - 953- 7865)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1일 현재)

| 명칭           | 소재지                                          | 전화                     | 관할구역                                                             |
|--------------|----------------------------------------------|------------------------|------------------------------------------------------------------|
| 총무부 세무과      | 〒460-85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3-1-2 (현청 내)         | 052-954-6052<br>(직통전화) | _____                                                            |
| 나고야동부 현세사무소  | 〒460-8483 나고야시 나카구 신사카에마치 2-9 (스카이오아시스사카에 내) | 052-953-7847<br>(직통전화) | 나고야시 지쿠사구 · 히가시구 · 나카구 · 메이토구                                    |
| 나고야북부 현세사무소  | 〒451-8555 나고야시 니시구 시로니시 1-9-2                | 052-531-6305<br>(직통전화) | 나고야시 기타구 · 니시구 · 모리야마구 · 기요스시 · 기타나고야시 · 니시가스가이군                 |
| 나고야서부 현세사무소  | 〒454-8503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주고 1-3                  | 052-362-3215<br>(직통전화) |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 나카가와구 · 미나토구                                        |
| 나고야남부 현세사무소  | 〒456-8558 나고야시 아쓰타구 모리고초 8-22                | 052-682-8924<br>(직통전화) | 나고야시 쇼와구 · 미즈호구 · 아쓰타구 · 미나미구 · 미도리구 · 덴파쿠구 · 도요아케시 · 닛신시 · 아이치군 |
| 히가시오와리 현세사무소 | 〒486-8515 가스가이시 도리이마쓰초 3-65                  | 0568-81-3139<br>(직통전화) | 세토시 · 가스가이시 · 이누야마시 · 고난시 · 고마키시 · 오와리야사히시 · 이와쿠라시 · 니와군         |
| 니시오와리 현세사무소  | 〒491-8506 이치노미야시 신세이 2-21-12                 | 0586-45-3170<br>(직통전화) | 이치노미야시 · 쓰시마시 · 이나자와시 · 아이사이시 · 야토미시 · 아마군                       |
| 지타 현세사무소     | 〒475-8505 한다시 데구치초 1-36(지타종합청사 내)            | 0569-21-8111<br>(대표)   | 한다시 · 도코나메시 · 도카이시 · 오부시 · 지타시 · 지타군                             |
| 니시미카와 현세사무소  | 〒444-8503 오카자키시 모다이지 혼마치 1-4(니시미카와종합청사 내)    | 0564-27-2712<br>(직통전화) | 오카자키시 · 헤키난시 · 가리야시 · 안조시 · 니시오시 · 지류시 · 다카하마시 · 하즈군 · 누카타군      |
| 도요타가모 현세사무소  | 〒471-8537 도요타시 모토시로초 4-45 (도요타가모종합청사 내)      | 0565-32-3381<br>(대표)   | 도요타시 · 니시카모군                                                     |
| 히가시미카와 현세사무소 | 〒440-8528 도요하시시 핫초도리 5-4 (히가시미카와종합청사 내)      | 0532-54-5111<br>(대표)   | 도요하시시 · 도요카와시 · 가마고리시 · 신시로시 · 다하라시 · 기타시타라시 · 호이군               |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수속을, 각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검사, 등록 신청,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 외에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고와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권합니다.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이나 신청절차 방법은 <http://www.oss.mlit.go.jp/portal/> 을 참고하십시오.

◎현 경계를 넘는 자동차 전출입 관련 자동차세의 월단위 할부계산 폐지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 이후, 현외(?外)의 분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현 번호의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중의 자동차세를 월단위로 할부계산하여 환급 또는 과세하지 않으며, 신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하여 현외(?外) 번호로 변경하신 경우는 다음 연도부터 이사한 지역의 도도부현에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및 양도 등의 등록절차 관련 상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의하십시오.

|                  |                        |               |
|------------------|------------------------|---------------|
| 아이치운수지국          |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기타에초 1-1-2  | 050-5540-2046 |
| 니시미카와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 도요타시 와카바야시니시마치 니시바산 46 | 050-5540-2047 |
| 고마키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 고마키시 신코키 3초메 32번지      | 050-5540-2048 |
| 도요하시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 도요하시시 진노신덴초 아자교노와리20-3 | 050-5540-2049 |